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12-09

대 구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5구합1269 취득세과세표준 및 세액경정청구불허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redacted]시장
변 론 종 결	2015. 9. 23.
판 결 선 고	2015. 10. 28.

주 문

1. 피고가 2014. 8. 26.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으로부터 [redacted]시 C 전 1521㎡ 외 4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4. 4. 16. 피고로부터 부동산거래계약 신고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12-09

필증을 교부받아,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과세표준액을 900,000,000원으로 하여 취득세 27,000,000원, 농어촌특별세 1,800,000원, 지방교육세 1,800,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원고는 2014. 7. 1.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461,000,000원으로 하는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을 재교부 받고, 2014. 8. 5. 실거래가액 정정에 따라 과세표준액을 461,000,000원으로 한 감액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4. 8. 26.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을 재교부 받았다 하더라도 취득세의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5. 6. 11. 기각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매수인이 실제 지급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원고는 B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461,000,000원에 매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추후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매매대금을 900,000,000원으로 하여 신고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취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은 감액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지방세법 제10조 제1항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고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12-09

규정하고, 제2항은 위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세기본법 제17조 제2항이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 중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지방세법 제10조 제1항과 제2항의 관계에서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임을 전제로 그 가액을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이 '취득 당시의 가액'인 실제 가액보다 많은 경우 실제와 다른 초과부분은 '취득 당시의 가액'이 될 수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취득자가 사실과 다르게 과다한 금액으로 취득 신고를 하였으나 이를 바로 잡아 실제 취득금액으로 가액을 변경 신고하였다면 실제 취득한 가액이 취득 당시의 가액이라고 보아야 한다.

2) 갑 제1, 5, 7,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2013. 12. 20. B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461,000,000원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당일 B에게 계약금 30,000,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2014. 4. 16. B의 계좌로 419,200,000원을 송금하는 등 합계 461,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와 B은 사실과 다르게 매매대금을 900,000,000원으로 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부동산거래 신고를 하였다가 2014. 7. 1. 매매대금을 461,000,000원으로 하는 수정신고를 하여 피고로부터 부동산거래 신고필증을 재교부 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3)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은 461,000,000원으로 경정되고 세액도 감액되어야 하므로, 그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12-09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연우

판사 이혜랑

판사 김정기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12-09

[별지]

관계법령

■ 지방세법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③ 건축물을 건축(신축과 재축은 제외한다)하거나 개수한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 차량 및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④ 제7조 제5항 본문에 따라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에 대한 과세표준은 그 부동산등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 나눈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과점주주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표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과세표준보다 적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법인의 결산서 및 그 밖의 장부 등에 따른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총액을 기초로 전단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⑥ 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여 취득하는 경우로서 취득가격 중 100분의 90을 넘는 가격이 법인장부에 따라 입증되는 경우에는 제2항 단서, 제3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세기본법

제17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12-09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을 적용한다.
②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 중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51조(경정 등의 청구)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음을 안 날(결정 또는 경정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를 말한다]에 최초 신고 및 수정신고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환급세액(「지방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보다 적을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따라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3.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지방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를 한 자가 2개월 이내에 아무런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제8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④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 및 통지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끝>